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2017.2.27.)

조례 · 규칙안 검토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허 등 현]

의안번호 제2017 - 10호

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2. 14.

나. 발 의 자: 김종두·표주숙·박희순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
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7. 2. 16.

2. 개정이유

○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(안 제2조 제4항) 신설
 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「지방자치법」제33조
- (2)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3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: 2017. 2. 10. ~ 2. 16./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O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

【지방자치법】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-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塡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
-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-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.>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4.6.3.>
 - 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금액
 - 2. 여비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- 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── 검 토 보 고 서 ──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2. 14.

나. 발 의 자: 박희순·김종두·표주숙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
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7. 2. 16.

2. 개정이유

○ 거창군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 · 부의장의 임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장과 부의장 임기 구체화(안 제9조제2항, 제3항)
 - O 현행: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<u>선출된 날부터 2년</u> 변경: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
 - ※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하고 후반기 의장단 임기 시작일은 7월 1일이 되도록 변경함.
 -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선출한 날 전일까지 재임.

- 나.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(안 제65조의2)
 -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절차를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심사 절차와 통일
- 다.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(안 제66조의2)
 - O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명문화
 - O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방법 및 질문시간 구체화하여 혼란 방지

현행(관례상)	변경(회의규칙 명시)	비고
본 질문 20분	본 질문 20분	일괄질문
보충질문 10분 (답변시간 제외)	보충질문 20분 (답변시간 포함)	일문일답
추가 보충시간 없음	추가 보충시간 10분 (의장이 허가하는 경우)	

- O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 명시
 - 의원은 질문요지서 작성하여 의장 제출
 ⇒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
 -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O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 및 제7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: 2017. 2. 10. ~ 2. 16./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거창군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·부의장의 임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.
- O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🔴 관련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48조(의장 ·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

-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.
-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

제71조(회의규칙)

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